

서울시 청년 뉴딜일자리사업 운영기관 공동 설명회 Q&A 요약

※ 본문의 용어 중 서울시 청년일자리허브는 허브 또는 청년허브로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경 또는 사경센터로 명기되었습니다.

Q&A 정리

협력사업장 지원 자격

[소재지]

Q. 프로젝트는 서울시 안에서 하는 것만 하는 것인가.

A. 서울시가 아니면 어렵다. 예외조항은 도농교류만 이다.

Q. 참여자로 지원하는 분들이 서울시 소재여야 하는가?

A. 서울시의 시비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서울시가 아니면 안 된다. 실제로 9월에 시의회에서 혁신활동가 신원조회를 해서 1명이 경기도 사는 사람이라서 관련 질의가 있었다. 서울에 살더라도 주소지를 옮기게 되면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실제 확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판단하게 된다.

단체의 경우, 단체등록증 기준의 소재지 주소가 서울시이거나 단체등록증이 없는 경우 대표자의 주소지가 서울이어야 합니다. 혁신활동가로 참가하는 청년의 경우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이어야 합니다.

[참여 제외 대상]

Q. 공고문의 참여 제외 대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에서 유사지원사업으로, 사회적 기업육성사업은 해당되는지?

A. 프로젝트 중심으로 판단하게 될 것 같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해당되지 않는다.

Q. 구청에서 전문인력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데 만료가 7월이다. 그래도 할 수 있는지. 당장 인건비 받는 것을 끊으면 가능한지.

A. 먼저, 유사사업의 기준은 인건비를 지원 받느냐 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고기준일로 판단하게 된다. 우리가 선정하는게 아니라 선정위원회가 하게 된다. 그래서 이 문제는 확답을 하기 어렵다.

전문인력은 어떤 전문인력인지 확인해야 한다. 어느 쪽이 안 되는지 보다 어느쪽이 되는지를 우선적으로 봐줬으면 좋겠다. 청년육성인지, 사회적경제인지를 판단해주어야 한다. 청년의 경우 청년의 주체적 일경험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인지가 중요하다. 선정위원들이 판단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두어야 한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인건비를 기본적으로 지원받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동일한 프로젝트에 다른 복수의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것이 안 된다는 것.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봐야 한다. 같은 프로젝트면 중복지원은 안 된다.

Q. 유사지원 관련. 청년창직 인턴제는 인건비 50%지원이다. 이것도 유사지원인가.

A. 고용노동부 입장으로 말씀드리면 100% 동일사업이다. A라는 기관이 B라는 프로젝트를 10명이 하는데 5명은 어디서 받고, 나머지 5명은 다른 곳에서 받으면 안 된다. 다만 A라는 기관이 B라는 프로젝트는 기존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인데, 새로운 C라는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것이라면 검토해 볼 수 있다.

[지원 가능 여부]

Q. 생협준비중인 상황입니다. 지원 할 수 있는가? 생협 매장의 오픈은 다음달 예정이다.

A. 청년허브의 경우 단체는 임의단체라도 상관없다. 청년단체는 법적등록단체가 아닌 임의단체가 많은 편이다. 경험과 일 교육을 이야기 하게 되는데 조직이 너무 스타트업 상태라서 교육과 경험을 제공하기 어려운 단위면 어렵다. 조직구조도, 인력주고, 설립계획 등을 자세히 알려주시면 될 것 같다. 사경센터의 경우는 법인을 가지고 있는 것을 중요하게 본다.

Q. 장애아동과 독거노인 아토피 가정 사람들에게 건강용품 개발, 건강관리 콘텐츠 개발을 하고 있다. 35페이지. 사업장 기준이 상시근로자 3인, 2년 이상 활동경력의 제한사항.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근로자 주소는 서울시에 근거지에 두어야 한다고 하는데. 회사는 목동에 있다. 그리고 역삼동에 하나 있다. 대표자 주소지는 경기도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A. 활동경력, 2년이상 등은 사경의 기준. 허브는 청년의 주체적인 일경험을 위주로 선발하게 될 것이다. 1명만 신청하는 경우보다 팀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경은 그 보다 들어가서 일을 배우는 구조를 원한다. 그래서 안정적인 사업장을 원한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상 소재지가 서울이면 된다.

Q. 한국사회의료협동조합, 두 명 신청하게 되면 대안유통을 생각하고 있고 중간지원조직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A. 사경센터 쪽으로 가능하다. 대안유통 사업보다는 중간지원 사업으로 하는게 인력지원이 더 넉넉할 것이다.

Q. 기업체의 기준이 법인이어야 하는지. 올해 3년차 된 기업이다. 상시근로자가 3인 이상일 경우는 4대보험된 것인지, 3인에 대표자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우리는 예비사회적기업이다. 3년차 이기는 하지만 법인으로 등록한지는 1년이 되질 않는다. 사경으로 지원이 가능하겠는가? 아니면 허브의 프로젝트성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A. 누가봐도 사회적기업으로 유망한 곳이 청년허브 협력사업장이면 좀 그렇다. 사경센터는 조직의 안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허브는 임의단체도 상관없다. 사경센터는 활동이 2년 이상이기만 하면 된다. 2년 이상의 자격은 모태조직의 기간까지 더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 허브는 청년의 일과 경험을 지원하는 것을 기본 조건으로 삼는다. 즉 참여자가 해당 프로젝트를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다만 스타트업 상태면 곤란하다. 근데 이것도 선정위원회에서 판단하는 문제다. 상시근로자는 서울시의 해석은 4대보험 적용되는 상용근로자다. 즉 3개월 이상 적어도 매일매일 출근하여 근무한 사람이 3명이상 있는 사업장을 의미한

다. 대표자도 포함할 수 있다.

□ 지원 분야

Q. 청년허브, 사경센터,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의 협력사업장 모집에 동시지원 가능한가?

A. 14년 서울시 뉴딜일자리 사업은 2,000명 25개 사업. 결과적으로는 뉴딜 일자리 사업은 하나의 사업임. 그중 하나를 센터들이 운영위탁을 받고 있다. 다른 센터에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다.

Q. 3센터 중복지원은 어렵다고 이야기 했는데, 청년 주거 공동체 활동과 마을 활동을 주로 하고 있다. 마을 활동 쪽은 마을센터에서 할 수 있는데, 다만 인근 시장 유희 공간 활용으로 사업을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허브의 도시재생 쪽으로 활동을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눠서 지원하는 것은 어떠한가.

A. 한 사업장이 센터별로 지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렵다. 다만 프로젝트가 너무 상이해서 지원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센터 간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지금은 안 된다고 하는 지침상의 근거는 없다. 다만 기본적으로 많은 사업장,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자는 취지가 있다. 많은 현장을 성장시키기 위해 많은 현장에게 열어두자, 특정 현장의 과독점을 막자는 취지가 있다. 다만 프로젝트의 상이성 문제는 프로젝트를 보고 논의해 보겠다.

Q. 현장협력형으로 청년혁신일자리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A. 기본은 전년도 기준으로 집계를 한 것. 허브와 사경이 다른 것은 청년주체 양성이 더 의미를 두고 있다. 사회적 경제 분야의 영역이 정해져 있지는 않다. 공정무역 자체 보다 청년에 대한 것이 있는지가 중요하다. 사회적 기업의 경우 애매할 수 있다. 어떤 곳은 허브로 들어와 있고, 어디는 사경으로 들어왔었는데, 올해는 사경 쪽으로 분명하게 역할을 구분하려고 하고 있다. 다만 기업별로 허브와 사경이 딱 나눠서 분류하기는 어렵다.

Q.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에서 네 가지 신청 분야를 이야기 했다. 한 사업장에서 네 가지 분야를 다 하지 못하고 하나만 신청해야 하는 건가? 또 하나, 전통시장 연계하여 사업모델을 만들려고 할 때 거기 활동가를 대안유통쪽 운영기관도 가능한가?

A. 중복신청도 각각의 취지에 맞으면 가능하다. 다만 사수, 교육전담 인력이 갖춰진 것인지가 중요하다. 대안유통 쪽 관련은 전통시장 쪽은 해당이 어렵다.

전통시장은 뉴딜일자리 사업중 전통상인 활성화 사업으로 소상공인 지원과에서 하는 쪽으로 지원하는 것이 나올 것 같다. 전년도 하반기에 뉴딜일자리로 시작한 사업이다. 대부분 청년들이 했었다. 소상공인 지원과에 문의 바란다.

Q.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신청하는데, 사경에서 말하는 4가지 다 해당 안 되면 허브에 신청해도 되는지.

A. 이 사업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인건비 끌어오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부분 강조한

다. 기본 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청년의 자립을 돕고자 하는 프로젝트일 때 지원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정말 새로 시작한 단위는, 사회적 경제 영역은 수십년 된 규모가 큰 산업은 아니다. 누구나 물리적 한계는 있다. 물리적 한계가 강하고 토대가 약할 때 이런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의 목적-미션에 부합되는 니즈가 있을 때 지원 하면 좋다. 사례를 하나 더 말하자면, 실제로 작년에 마포는 대학, 10명 뽑았다. 70% 고용승계 되지 않았다. 하지만 전체 참여 사업장 중에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모두가 주체였기 때문이다. 모두가 스타트업의 주체였다. 역설적으로 만족도, 성장속도가 가장 좋았다. 청년의 입장에서 보면 역설적인 상황이다, 일에서의 주도성, 자존감의 상승. 이게 보장되면 만족도가 높다. 너무 조건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 프로젝트 계획서

Q. 프로젝트를 참여자가 주도 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 하는데 뉴딜 매니저의 역할 기준은 무엇인지, 장기적으로 보면, 예산이 투입되고 사업장의 결과물을 판단하게 될 텐데. 사업장에게 부담이 되는 장치들이 있는지, 그것이 크다면 사업장에서 미리 대비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

A. 서울시의 중요한 평가기준 두가지. 하나는 교육훈련 시간, 다른 하나는 이후 고용승계, 올해 5명을 받았는데, 한명도 채용 안 되고 다 흩어지면 내년에 지원받기 어려울 수 있고 우리도 권하지 않는다. 그래서 후속연계를 고민해 달라고 한다. 지원 기간이 끝나가는 과정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 어쨌든 평가 집계는 이런 형태로 한다.

결과적으로 맨 마지막 12월에 성과관리 보고를 하게 된다. 종료일 + 한 달 뒤, 로 판단한다. 이것으로 내년도 뉴딜일자리를 하게 될 것이다.

청년이 주체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보완장치. 매니저가 현장방문, 인터뷰 등을 한다. 과정속에서 판단할 것이다. 청년단체의 경우 기반이 없어서 후속연계에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너무 개의치 않았으면 좋겠다. 이는 운영기관들도 함께 책임지고 나가야하는 문제다. 취업연계는 반드시 200이상 임금이 나오는 일자리만을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청년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 경험을 살리면서 살 수 있도록 연계해 줄 수 있어야 한다.

□ 청년혁신활동가 배치와 운영

Q. 한 사업장에서 두 가지 프로젝트로 참여자를 배치 할 수 있나?

A. 작년에 어느 사업장은 15명, 10명 배정되었는데 이에 대해 문제제기가 많았다. 참여사업장에 대한 기회를 더 많이 주기위해서 5명이하로 정하게 되었다. 프로젝트를 여러개 신청하는 것을 모두 지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Q. 참여자 주민등록지, 공고일 기준인가.

A. 4대보험 기준. 작년에 청년허브는 근무일이 기준, 사경센터는 공고일이 기준이었다. 이는 확인하고 이야기 해주겠다.

Q. 임금기준 두가지(경력형과 경험형) 누가 판단하는가?

A. 임금은 신청자의 상황과 기준에 따라 나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 경력있으면 경력형으로 책정하려고 한다. 즉 들어오려는 사람을 보고 판단하게 될 것이다. 사경센터에 지원할 수 없다면 청년허브로 지원해되 된다.

Q. 8시간 이상 근무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참여자 근무시간은 지침상으로는 8시간 이외의 시간외 근무의 문제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 임금을 서울시에서 줄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시간외 근무는 현장에서 조치를 해줄 수 있어야 한다. 활동비 형식이든 보조든 지원해주어야 한다. 참여자들에게 식대가 별도로 나가지 않는다. 임금만 딱 받는데 시간외 근무를 하게 되면 의외로 예민한 문제가 발생한다.

원칙적으로는 하루 8시간이다. 급여계산 방식 자체가 그 월의 일급으로 계산된다. 초과 된 것은 계산 될 수가 없다. 규정상으로는 그렇다. 이 문제는 현장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주 40시간이 넘는 경우 그때 조치를 어떻게 할지를 이야기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Q. 뉴딜일자리 사업으로 근로 계약을 맺고 1년에 1회 정도 해외 탐방을 할 계획이다. 이런 것도 가능한가. 그렇게 되면 24시간 근무인 것인가?

A. 하다보면 해외탐방이 있을 수 있는데, 기획서를 미리 센터로 공유를 해주셔야한다. 출입국 관련해서 왜 근무 안하고 해외 가냐는 게 문제제기 될 수 있다. 출장가서도 일하는 근무시간은 똑같다. 그건 탄력적이고 자율적으로 해주면 될 것 같다.

□ 신청 서류 작성과 관련한 부가 설명

유사사업, 꼭 기재해야 한다. 기재 안했다가 나중에 확인되면 엄청 문제된다. 특히 최근 3개월 이내일 경우 반드시.

근무기간, 프로젝트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작성. 다만 고용승계가 되지 못한다면 실업급여 수령 문제를 고려. 8개월 이상은 해야지 실업급여가 나온다.

업무내용. 구체적으로 써주어야 한다. 추상적으로 쓰면 안된다. 예컨대 무슨무슨 프로젝트 기획/운영 등으로 말고. 구체적으로 몇 줄이라도 짧게 써주면 좋다.

사업장 실적, 일반 사업장의 경우, 청년허브의 경우 활동경력 2년을 전혀 안 보지는 않는다. 어필하고 싶으면 스크랩 기사 같은 거 첨부해 주셔도 좋다.

추진 기관 같은 경우 조직의 역량 과정 등을 써주면 된다.

참여자 선발 기준은 어떤 참여자를 선발할지 기준을 써 달라. 참여자 모집 공고시 기재하려고 하는 것. 명료하게 써달라. 예로 들이면 경력을 너무 많이 선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모든 민간 노동시장에서 경력자를 요구하는데, 이 사업에서도 경력직만 선호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

교육훈련은 가급적 자세히 작성해 달라

후속연계, 몇% 고용승계 가능한지, 어디와 연계되어 인력을 넘길 수 있는지, 창업지원등을 하는 지 등에 대해 써주면 된다.

□ 마무리 발언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일자리 지원받는 사업이라기 보다는 사람이 오고가는 것을 고민해주었으면 한다. 어디 앉아서 일하는지, 같이 일하는 사람은 누구인지를 고민하면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나올 수 있다. 바빠서 이런걸 준비못하게 되면 그 자체로 조직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힘들더라도 미리 정리와 준비를 해주었으면 한다.

청년일자리허브

미리 어떤 참여자를 고민 안할 수도 있는데, 미리 고민 하고 있을 수 있다. 이미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한다. 전년도 혁신활동가 참여문제가 있다. 반복참여는 안 된다. 다만 그 중에 단기간 6월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은 반복참여가 가능하다. 단 총11개월이 마감이니, 도합하여 그 기간을 넘을 수는 없다. 또한 단기 전년도 활동가를 하게 되면 또 5개월 이후 사람을 다시 뽑아야 한다. 이 문제를 고려해 주길 바란다.